

의안번호	제2770호
의 결	2024. 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고성군의회의회장
발의연월일	2024. 1. 17.

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 번호	제2770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. 17.

발 의 자: 고성군의회의회장

1. 제안이유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고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56조의2에 의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함에 따라,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주민조례청구안을 발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현대화 시설 및 악취저감시설”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
나.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 변경(안 제3조제2항)

다.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·개축 기준 변경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조 례 명 : 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개정

나. 대 표 자 : 박완욱

다. 청구일자 : 2023. 8. 31.

라. 청구취지

-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 및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 요청함.
-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 등

- 마. 서명기간 : 2023. 9. 4. ~ 12. 4.(3개월)
- 바.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: 2023. 11. 16.
- 사. 청구권자 수 요건미충족 보정안내 : 2023. 12. 8.
- 아. 주민조례 보정청구인 명부 제출 : 2023. 12. 20.
- 자.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23. 12. 26. ~ 2024. 1. 4.
 - 필요연서수 : 906명 이상(청구권자 총수 1/50 이상)
 - 유효서명인수 : 927명
- 차.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회부 : 2024. 1. 5.
- 카. 수리 심의 결정 : 2024. 1. 9.
- 타. 입법예고 : 생략
 - 「2023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」(p39 Q&A),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”이란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2와 같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증축: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/5이상(단, 소는 2/3) 동의를 득하는 경우, 2012년 4월 27일(단, 양계는 2020년 1월 1일) 당시 시설면적의 50%범위에서 증축

별표2 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육제한거리	사육제한축종
<u>150m</u>	<u>소(육우 포함), 말, 양(염소 등 산양 포함), 사슴</u>
<u>300m</u>	<u>젓소</u>
<u>500m</u>	<u>개, 닭</u>
<u>700m</u>	<u>돼지</u>
<u>1,000m</u>	<u>오리, 메추리</u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의) (생 략) 1. ~ 6. (생 략) <신설></p> <p>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.</p> <p>제4조(기존시설의 증·개축) (생 략)</p> <p>1. 증축: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리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/5이상(단, 소는 2/3) 동의를 득하는 경우,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50%범위에서 증축</p> <p>2. 개축: (생 략)</p> <p>[별표] 가축사육 제한구역(제3조 관련)</p> <p>1. (생 략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육제한거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육제한축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, 말, 양(염소 등 산양 포함), 사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젓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닭, 메추리, 개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돼지, 오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~ 7. (생 략)</p>	사육제한거리	사육제한축종	200m	소, 말, 양(염소 등 산양 포함), 사슴	500m	젓소	700m	닭, 메추리, 개	1,000m	돼지, 오리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“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”이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별표 2 -----.</p> <p>제4조(기존시설의 증·개축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2012년 4월 27일(단, 양계는 2020년 1월 1일) -----.</p> <p>2. 개축: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2] 가축사육 제한구역(제3조 관련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육제한거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육제한축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0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(육우 포함), 말, 양(염소 등 산양 포함), 사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젓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, 닭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00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돼지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리, 메추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	사육제한거리	사육제한축종	150m	소(육우 포함), 말, 양(염소 등 산양 포함), 사슴	300m	젓소	500m	개, 닭	700m	돼지	1,000m	오리, 메추리
사육제한거리	사육제한축종																						
200m	소, 말, 양(염소 등 산양 포함), 사슴																						
500m	젓소																						
700m	닭, 메추리, 개																						
1,000m	돼지, 오리																						
사육제한거리	사육제한축종																						
150m	소(육우 포함), 말, 양(염소 등 산양 포함), 사슴																						
300m	젓소																						
500m	개, 닭																						
700m	돼지																						
1,000m	오리, 메추리																						

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(주민조례발안법)

제4조(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을 부과·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
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4.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

1.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·도: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
2.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: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
3.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
4.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
5.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
6. 인구 5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

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청구인명부의 제출 등)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(전자서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·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,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
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

- 결정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■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

- 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
-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.

■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

제56조의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